

"정부 3.0 국민과의 약속" -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.



군 산 시



수신 군산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
(경유)
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유권해석 알림

1.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-9575(2015.2.10.)호 및 전라북도 주택 건축과-19152(2015.12.1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주택법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(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-4600, 2015.11.26)를 반영하여 질의 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질의요지 :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친 경우 그 임기가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지?

나. 답변내용 :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2년을 모두 마쳤다면 그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8항에 따른 중임제한 횟수 산정시 포함됨. 끝.

군 산 시



주무관 **박경민** 공동주택관리 건축과장 전결 2015. 12. 17.
 팀장 **박상열** **이광태**

협조자

시행 건축과-55511 (2015. 12. 17.) 접수

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, 군산시청) / www.gunsan.go.kr

전화번호 063-454-3717 팩스번호 063-452-8828 / kkan0223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50만,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